2022년도 제10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2. 5. 31.(화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홍지만(분과위원장), 김민아, 홍지만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94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177건(안건번호 제2022-47722호~5089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47722호~47723호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출판저작물(만화)의 일부분을 게시한 사안으로, 특정 목적에 의해 선택된 일부에 대한 이용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2-47724호~47725호는 블로그에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점,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천게시물과 별도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47724호~47725호는 웹하드, ◆◆◆ 블로그 및 카페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4,921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ㆍ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6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678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 (안건번호 제2022-16588호~17265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6개, 총 678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홍지만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10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2-9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홍지만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2.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홍지만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4,932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47722호~47723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커뮤니티 사이트에 출판저작물(만화)의 일부분을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만화를 소개하고 있는 게시물로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만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특정한 캐릭터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게시물로 보임.

- C 위원: 대사 부분을 임의로 변형하여 만화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는 아닌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런 것은 아니며, 정식으로 번역 발매된 만화책의 일부분을 그대로 복제해서 게시한 것임.

- E 위원: 이렇게 만화를 복제하여 게시한 경우 몇 장 정도부터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가? 예를 들어 몇 장, 몇 페이지, 몇 컷 등의 기준은 없는가?

- 오진해 전문위원: 예를 들어 웹툰의 경우 유료 회차는 무료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따로 게시하지 말아달라는 플랫폼 또는 저작권자의 자체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사례는 있음. 그러나 법원의 판단 등으로 제시된 절대적인 양적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임.

-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있는 건 한 장면인데, 만약 전체 페이지 컷이 여러 장 올라온 경우 시정권고를 한 사례가 있었는가?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 목적으로 한 화 전체를 전송한 경우 시정권고를 한 사례가 있음.

- C 위원: 음악의 경우 약 30초의 미리듣기를 제공하는데, 유료 만화의 경우 두 컷에서 네 컷 정도가 미리보기에 해당할 것임.

- E 위원: 두 페이지가 아니라 컷 단위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출판 만화와 웹툰의 차이인데,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출판만화의 경우에는 페이지 단위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여러 개의 컷이 있음. 반면 웹툰 같은 경우에는 C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그림이 컷 단위임. 출판만화의 경우 평균 16페이지 정도가 한 화인데, 웹툰 같은 경우 70컷 정도가 한 화를 구성함.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2-47722호~47723호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C 위원: 동의함. 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47722호~47723호는 특정 목적에 의해 선택된 일부에 대한 이용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47724호~47725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에 불법복제물

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C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47724호~4772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47726호~47730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 ◆◆◆ 블로그 및 카페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

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47726호~4773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47731호~50898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프로그램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중점](영화)공기살인 (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49062호 '[중점](영화)공기살인 (2020)'는 2022. 4. 22. 개봉한 국내 영화로 웹하드에서 210포인트에 판매중임.
('(음악)심의에 걸리는 사랑노래 (Feat. twlv) (가수: 타이거JK)'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49856호 (음악)심의에 걸리는 사랑노래 (Feat. twlv) (가수: 타이거JK)'은 2020. 5. 26. 발매한 한국음악으로 다음카페에서 제공중임.
('[중점](방송)살인자의 쇼핑목록(202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50734호 '[중점](방송)살인자의 쇼핑목록(2022)'은 2022. 4. 27. ~ 2022. 5. 19. 방영한 한국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65포인트에 판매 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위 3건을 포함한 4,921건에 대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2-47731호~5089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47731호~5089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2-47722호~47723호는 부결하고 제안건번호 제2022-47724호~47725호, 제2022-47726호~47730호는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2-47731호~5089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0쪽부터 13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16588호~17265호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 요청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o 홍지만 분과위원장이 제10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10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6. 7.

분과위원장 홍지만

위원 김민아

위원 박정인